

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서식]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(kreach.me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개정 2024. 4. 9.>

[] 제조 [] 수입 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14일		
신청인 (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)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		
	성명(대표자)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(전자우편:)			
	소재지(사업장)		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			
신청사항	화학물질명 (총칭명)					
	고유번호 (CAS No.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)	① 상품명				
	② 용도					
개별제출 사유	[] 영업비밀 공개로 상업적 손실 발생 [] 개별제출로 인한 비용절감 가능 []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대한 이견 [] 시험자로 선택에 대한 이견 [] 보유한 등록신청자료를 다른 제조·수입자가 무상으로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					
③ 구체적 사유 기술						
수입자 (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자인 경우)	④ 상호(명칭)	⑤ 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⑥ 대표자	⑦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⑧ 수입량 (톤)	⑨ 수입국
⑩수탁자 (신청인이 위탁한자인 경우)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대표자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사업장 소재지	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

위와 같이 [] 제조 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[] 수입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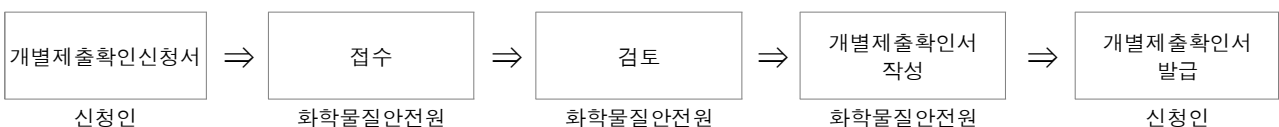
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등록신청 관련 개별제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국외제조·생산자에 의한 선입사실 신고증 1부(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·생산자가 선입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) 3.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(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) 4. 자료제공 동의서(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호에 따라 개별제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.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1. ①란의 상품명은 개별제출확인을 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.
2. ②란은 해당 화학물질의 상품 내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.
3. ③란은 등록신청 개별제출 사유를 상세히 기술합니다.
4. ④란 ~ ⑩란은 신청자가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라 선입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. 다만, ⑧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.
5. ⑩란은 신청자가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